

학사관리위원회 규정

(제정 2011. 4. 13.)

(분리개정 2017. 9. 1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학사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연구 및 심의한다.

1. 수업 및 학적 관리
2.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
3. 졸업사정
4. 그 밖에 학사관리와 관련된 중요사항

[본조개정 2017.9.1.]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학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20.4.14.>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

③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학사지원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[본조개정 2017.9.1.]

제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1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은 폐지하며, 교육과정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수행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.